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3
----------	-----

제출년월일 2001. 4.  
제출자 제천시장

### 1. 제안사유

-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각 동의 설문조사결과 통반장의 임기를 조항에서 삭제하여 현행처럼 2년마다 임명(연임의 경우)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 이장과 같이 임기를 폐지하여 주민 자율에 의한 자연스런 통반 운영을 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통반장의 2년 임기조항을 삭제

### 3. 입법예고기간 : 2001. 3. 5 ~ 2001. 3. 19

###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6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1조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 참고자료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통반장의 임명)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통반장의 임명)</p> <p>①~②(생략)</p> <p><u>③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u></p> <p><u>할 수 있다.</u></p> <p>④(생략)</p>	<p>제5조(통반장의 임명)</p> <p>①~②(현행과 같음)</p> <p><u>③(삭제)</u></p> <p>③(현행과 같음)</p>



## 제천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흐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칼	



제331호 2001. 3. 9. (금)

### 【입법예고】

○ 제천시공고제2001-102호(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 2

### 【공 고】

○ 제천시공고제2001-103호(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 3  
○ 제천시공고제2001-105호(도로지정공고) ..... 4  
○ 제천시공고제2001-106호(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 12  
○ 제천시공고제2001-111호(도시계획시설(도로)공란공고) ..... 13  
○ 제천시공고제2001-112호(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 14  
○ 제천시공고제2001-113호(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 15

회	2001. 3. 9.	한국당						2001. 3. 9.	2001. 3. 9.
람	2001. 3. 9.	한국당						2001. 3. 9.	2001. 3. 9.

발행 : 제천시      주소 : 광보담당관실(☎ 640-6052,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천남동 12-2번지)  
제천시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되며, 원고마감은 매주 수요일까지 22:00이다.

제 331 호

제 천 시 보

2001. 3. 9(금)

일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2001-102호

제천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일법예고 합니다..

2001년 3월 5일

제 천 시 장

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일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통반장의 임기를 조항에서 삭제하여 현행처럼 2년마다임명(연임의 경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이장과 같이 임기를 폐지하여 주민 자율에 의한 자연스런 통반 운영을하도록 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③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1년 3월 19일까지 제천 시장(참고:자치행정과)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640-6108, 6122)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No. : 184] [Writer : 자치행정과] [Date : 01-03-02 오] [Visited : 51]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공고 2001 ~ 102호

제천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 3. 5  
제 천 시 장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조례명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2. 개정취지

○통반장의 임기를 조항에서 삭제하여 현행처럼 2년마다 임명(연임의 경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이장과 같이 임기를 폐지하여 주민 자율에 의한 자연스런 통반운영을 하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현행 >

③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개정 >

③삭제

####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1년 3월 19일까지 제천시장(참고: 자치행정과)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640-6108, 612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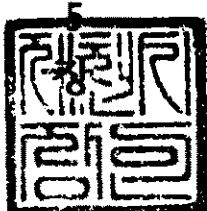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 2001 - 102호

제천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 3.  
제 천 시



#### 1. 조례명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2. 개정취지

통반장의 임기를 조항에서 삭제하여 현행처럼 2년마다임명(연임의 경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이장과 같이 임기를 폐지하여 주민 자율에 의한 자연스런 통반 운영을하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u>③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u>	<u>③삭제</u>

####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1년 3월 19일까지 제천시장(참고:자치행정과)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640-6108, 6122)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2의 건국」 참여하자! 바르게하자! 다시뛰자!

## 제 천 시

우(390-701)충북 제천시 천남동 12-2 / 전화(043)640-6108/ FAX640-6129 (kangc@jecheon.chungbuk.kr)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과장 조동현/시정담당주사 함영득 /담당자 강명희 e-mail:kmlh6256@hanmail.net

문서번호 자치 13060- 6,1

시행일자 2001. 2. 28(3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3년	시장	
공개여부	공개		
부시장		26년	
총무사회국장			
자치행정과장	전결	◎시정담당 함영득	협조
기안자	★가민		
심사자		심사일	

### 제목 제천시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1.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심의안건중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중 제5조제3항의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중 임기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에 앞서,

2. 임기폐지에 따른 동의 의견수렴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 의견수렴 결과 1부. 끝.

## 제 천 시 장

기본이 바로선나라! 내가 만들어갑니다.

## 통.반장 임기폐지 의견수렴 결과

### 1. 동장의견 : 존치(4명) 폐지(5명)

#### ○ 존치해야할 이유

- 장기재직 통장의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경질코자 할 경우 임기조항을 삭제하면 어려움 초래
- 도심지역 통장의 경우 대동계등 주민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어 경질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어짐.

#### ○ 폐지해도 무방한 이유

- 임기와 관계없이 동장의 권한으로 무능력하거나 지탄을 받는 통장은 경질 가능
- 2년마다 재임을 물어야하는 행정절차 간소

### 2. 통장협의회장 의견 : 존치(1명) 폐지(8명)

#### ○ 존치해야할 이유

- 통장의 자질향상과 능동적인 행정추진 제고
- 주민의 신망을 얻기위해 적극적인 활동 추진

#### ○ 폐지해도 무방한 이유

- 굳이 임기를 두지 않아도 동장에게 임명권이 있어 언제든지 주민의 의사를 들어 경질 가능
- 2년의 임기조항으로 2년마다 재 신임을 물어야하는 불편사항임.

### 3. 담당과의 의견 : 폐지

○ 행정규제사무 목록이고,

○ 임기조항을 없앨 경우 다소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동장에게 임명권이 있어, 부적격자를 교체하는 등의 문제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임기조항을 삭제코자 함.

## 【동장의견】

동장별	존 치	폐 지	폐지 및 존치이유
계	4	5	
교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장과 달리 동의 경우 자치회의 활동이 활발한 바 통장 또한 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교량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책임자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임기제가 존치되어야 함.</li> </ul>
중앙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의 책임자선정이 어렵고 재 임명시 절차에 따라야하는 어려움.</li> <li>• 반장은 2년마다 교체시 업무의 과중 초래</li> </ul>
명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이장과 같이 통·반장의 임기를 두지않아도 행정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됨.</li> </ul>
의림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 능동적인 통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전제조건</li> <li>• 통장의 자질향상에 기여</li> <li>• 행정의 홍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음.</li> </ul>
용두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임명시 농촌통의 경우 주민의사를 들어 임명하고 도시통의 경우 아파트자치회나 라인별회,반장,부녀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고 있고,</li> <li>• 2년 임기로 인해 재추천에 따른 추천서정구동 불편함과 임기가 없어도 직무수행능력이 없거나 자단대상자는 동장이 교체할수 있음.</li> </ul>
동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통의 경우 대동계등이 있어 연말이나 연초에 총회에서 통·반장을 선출하고 있으나,</li> <li>• 시내통은 한번선출로 3·4년 또는 10년이상 장기제직으로 통장 경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5년 단임 또는 60세이하제한)</li> </ul>
청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근속에 따른 통장직 수행 소홀(임기존치시 주민의견수렴 후 교체가능)</li> <li>• 읍면지역의 이장과 달리 대동계등에서 주민의사를 들을 기회가 없어 장기제직에 따른 견제장치가 없어짐.</li> </ul>
화산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반장이 2년이상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존치실효성이 없음</li> </ul>
영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가 만료되어도 본인이 직무수행능력이 있고, 사퇴할 의사가 없으면 재임용하고 있으며, 통장 임용 및 해임권은 동장의 권한으로 별도의 임기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임</li> </ul>

## 【통장협의회장의견】

동장별	존 치	폐 지	폐지 및 존치이유
계	1	8	
교 동		○	• 조례상 통장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에 있어, 마땅한 책임자가 없는 등의 경우는 타의에 의하여 자동 선출되는 등 조항의 의미가 없음.
중앙동		○	• 통,반장 책임자선정의 어려움.
명서동		○	• 모든 통장들의 공통의견이 통,반장의 임기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있으며, 2년의 임기제한 규정은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으로서 임기폐지의견에 찬성함.
의림동	○		• 통장의 자질향상과 능동적인 행정추진 제고 • 주민의 신망을 얻기위해 적극적인 활동 추진.
용두동		○	• 연임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후 재 임명시 절차에 대해 통장들이 불편해 하고 있음.
동현동		○	• 임기와 관련없이 동장의 재량에 의거 임명 및 해임조치도록하여 폐지함이 타당함.
청전동		○	• 2년마다 주민의견없이 재임명하는 경우가 많고, 2년마다 재신임을 물어 재임 또는 경질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통장교체 • 장기제적 통장이 많을수록 마을현황 유지가 수월하고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
화산동		○	• 통,반장 말아보기를 꺼려하는 현실에서 임기조항을 두는 것은 통,반장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존치필요성이 없음.
영천동		○	• 임용 및 해임권은 동장의 권한이며 직무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의사가 없으면 별도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는 없음.

### 1126. 자치법규(내용)

페이지 1 / 2

자자법규

강원 삼척시

제공처 : 0000-0000-0000 1999/01/05

본문

발의자 :

◎ 삼척시동·반설치조례  
[1995·01·07 조례제0128호]  
개정 1995·11·28 조례제0162호

- የመሬዳዊ ስልጣኑና የዕቅድ, ወ/ሮ
- አገልግሎት በፊርማ ማረጋገጫ
- የመሬዳዊ ስልጣኑና የዕቅ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획기준) 토·리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동·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통·반장) ①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두다

- ②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통장은 관할 구역내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건강한 남·여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통 관할 구역안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개정 1995. 11. 28>
  2.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여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5. 11. 28>

④ 통계관찰과 임기는 21년으로 하되 빠른 임 할 경우이다.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두다

- ② 영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 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흐름하는 자종에서 자종에서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당당하도록 한다.

③ 영예반장으로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돋보인다.

제7조(임무) ①동·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토·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통보와 주민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 1126. 자치법규(내용)

14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 제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②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2일전까지 통·리·반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에서는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은 다음달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 건의한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반상회 건의사항별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제공)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액등) ①통장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자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③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26. 자치법규(내용)

페이지 1 / 1

자치법규

15  
강원 삼척시

제공처 : 0000-0000-0000 1999/01/05

본문

발의자 :

- ◎ 삼척시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1995·01·19 규칙 제0060호]  
개정 1995·11·28 규칙 제0081호  
1999·10·30 규칙 제02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의 리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이어야 한다.

1. 안보관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자 <개정 1995·11·28>
2. 농사경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활성한 자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자

②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5·11·28>

③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려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 ①리장은 마을주민(만 20세이상 남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옵·면장이 임명한다.

②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옵·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한다.<개정 99·10·30>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 해촉건의가 있을 때
4. 리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과 민원을 야기시킬 때
5. 리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6. 제2조(리장의 자격)제1항 각호의 규정에 반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26. 자치법규(내용)

페이지 1 / 1

16

자치법규

경기 용인시

제공처 : 기획예산담당관실 031-329-2053

본문

발의자 : 용인시장

용인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

[1996.03.01 규칙 제0082호]  
개정2000.11.21 규칙 제024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자격) ①통리장은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로 통·리인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자라야 한다.

②통·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통·리에 2년이상 거주(신설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려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통·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통·리장의 임명) ①통·리장은 제2조에 해당자로서 통·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 통·리의 경우에는 분리된 통·리에 구성된 통·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통·리장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 개발위원회에 통보하고, 후임자를 15일 이내에 추천도록 요구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5.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4조 (사무인계) ①통·리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 읍·면·동 직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 1부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1 규칙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 1126.11.21 >

1126. 자치법규(내용)

페이지 1 / 1

자치법규

경기 이천시

제공처 : 기획감사실 031- 644-2056

본문

발의자 : 이천시장

이천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 [1996·03·01 규칙제006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자격) ① 통·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통·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통·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이어야 한다.

1.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2. 통·리장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실한 자

3. 통·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

② 통·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통·리에 2년이상 거주(신설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30세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령일 경우에는 당해 통·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① 통·리장은 통·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통·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통·리장업무를 담당할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통·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부 칙(1996·03·01 규칙제0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1126. 자치법규(내용)

페이지 1 / 1

자치법규

경기 평택시

제공처 : 기획감사담당관실 031-659-4114

**본문**

발의자 : 시장

평택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  
[ 1995. 05. 10 규칙 제73호 ]

개정 1995. 09. 21 규칙 제87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명자격) ① 통·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통·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통·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① 삭제(1995. 9. 21)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개정 1995. 09. 21)

3. 통·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자.

② 삭제(1995. 09. 21)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정일 경우에는 당해 통·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개정 1995. 09. 21)

제 3 조(임명절차) ① 통·리장은 임기만료 30일전에 통·리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 통·리의 경우에는 분리된 통·리에 구성된 통·리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고, 후임자를 15일 이내에 추천토록 요구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통·리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통·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5. 기타 통·리장의 품위손상 등 읍·면·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③ 읍·면·동장은 통·리개발위원회에 통·리장 추천요구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일까지 추천이 없을 시는 읍·면·동개발위원회를 소집 책임자를 추천받아 직권으로 임명한다.

(본래는 통·리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였으나 통·리개발위원회는 주로 예외하여 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 09. 21))

부 칙 (1995. 05. 10 규칙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9. 21 규칙 제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1.1.5. 1.2 >